

북한이탈주민의 소송과 어려움*

이학인 |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 | hakin.lee@bkl.co.kr

1. 머리말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 7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분단 이후 2016년 3월 현재까지 북한을 벗어나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9,137명에 이르고 있다.¹⁾ 게다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 제3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도 10만명에서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의 헌법적 지위에 있고,²⁾ 헌법 제27조 제1항³⁾에 따라 재판청구권이 보장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과 법체계가 다를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가 다른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에 접근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의 이와 같은 어려움에 대응하는 사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소송 등 법률문제 현황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적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사법적 지원을 위하여 고려할 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 본고는 집필자가 2015년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연구를 수행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11의 일부 내용을 요약한 것임을 밝혀 둔다. 위 연구보고서의 원문은 'http://jpri.scourt.go.kr/post/postView.do?lang=ko&menuSeq=11&boardSeq=7&search=&searchName=&researchYears=&curPage=10&pageNum=2&seq=231'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 현황」(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검색일: 2016. 7. 11).
2) 북한이탈주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견해,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 이중국적자로 보는 견해 등 여러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참조).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제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한 이후 국적 취득절차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 창설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9조).
3)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II. 북한이탈주민의 소송 등 법률문제 현황

1. 북한이탈주민 법률문제 현황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사법적 지원을 위해서는 이들이 겪는 법률분쟁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당사자가 북한이탈주민인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소송 현황을 정확하게 집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서는 법원 내부의 판결문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건을 검색하는 방식, 남북하나재단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문기관의 법률상담 현황 등에 대한 조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문가의 자문⁵⁾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법률문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원 내부의 판결문 검색시스템에서 검색어 창에 “북한이탈주민”을 입력하여 검색하는 방식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재판당사자인 소송 현황을 파악하여 보았다(2010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18까지 선고된 판결문).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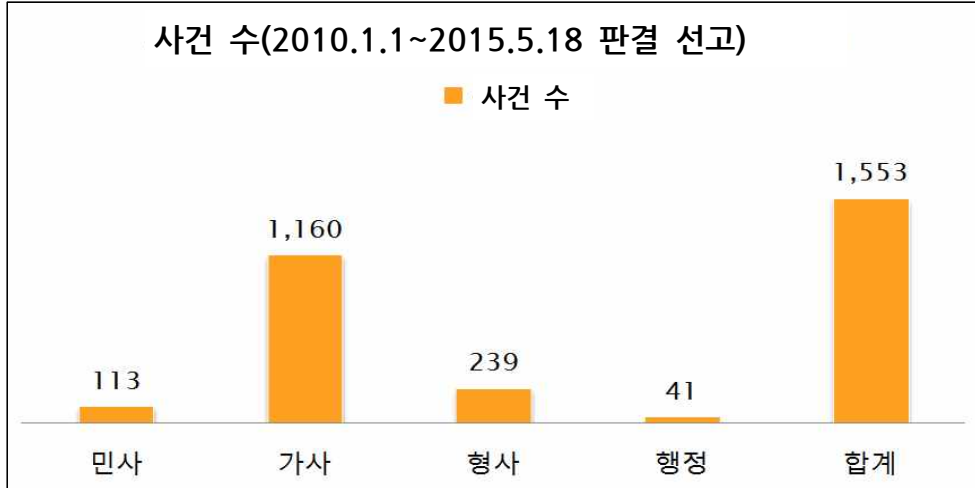
판결문 검색 결과, [그림 1]과 같이 민사 113건, 가사 1,160건, 형사 239건, 행정 41건 합계 1,553건이 검색되어, 가사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와 같이 검색된 사건들 중 실제로 당사자가 북한이탈주민인 사건은 민사는 30건 정도, 행정은 8건 정도로 나타났고, 가사와 형사는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이 당사자인 사건이었다.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법률분쟁을 겪고 재판절차 등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 8명에 대하여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세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는 위의 연구보고서를 참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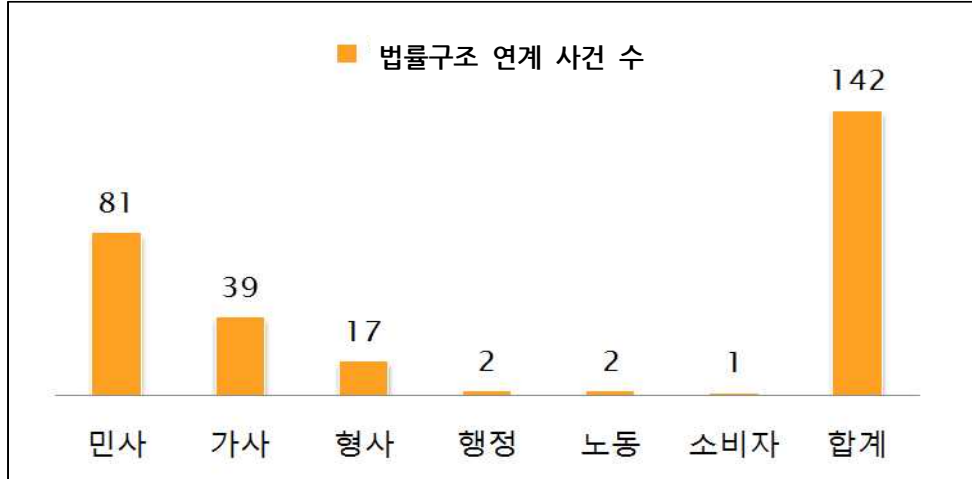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김은호 변호사, 김주완 판사, 송인호 교수, 유욱 변호사, 원지현 전문상담사, 이금철 법학전문대학원생(북한이탈주민), 이재용 변호사, 장지혜 변호사,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 태원우 변호사, 홍석인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자세한 자문 결과는 위 연구보고서를 참조 바란다.

6) 판결문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검색 결과에 나타나므로, 당사자가 북한이탈주민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북한이탈주민인지의 여부가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없어 판결문에 위 단어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검색 결과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이탈주민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판결문에서 인용한 법령 등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검색 결과에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위 조사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북한이탈주민 관련 소송(판결문 검색 결과)



[그림 2] 북한이탈주민 남북하나재단 법률상담 현황(법률구조 연계 사건 수)



한편, [그림 2]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상담⁷⁾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사건 중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구조에 연계된 사건 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2014년 연간). 이를 보면 법률상담은 총 676건이 이루어졌고, 그중 총 142건이 법률구조에 연계되었다.

7) 남북하나재단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다. 처음에는 주1회 실시되었는데 2013년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2회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남북하나재단에서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등을 통하여 소송 지원을 받게 된다.

법률구조에 연계된 142건은 민사가 81건, 가사 39건, 형사 17건, 행정 2건, 노동 2건, 소비자 1건으로, 민사의 비중이 가사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⁸⁾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상담 현황에서도 민사사건이 가사사건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즉, 판결문 검색 결과에서는 가사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발생하는 사건은 민사사건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¹⁰⁾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문가집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초기에는 가사사건, 탈북용역계약 관련 사건 등 북한이탈주민에게 특유한 법률문제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입국 초기 단계를 지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발생하는 소송 등 법률문제 현황을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과 민사소송

1) 가사사건

남한 입국 초기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혼인관계,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 문제 등으로 가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그 배우자와의 이혼, 중국 국적 배우자와의 이혼, 자녀에 대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나 인지, 인지무효소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서 중국 등 제3국을 거쳐서 남한에 입국하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신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신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생활관계를 계속해 감에 따라 중혼적 사실혼, 자녀에 대한 인지, 자녀의 국적 취득, 이혼 시 재산분할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8) 남북하나재단 제공 자료(2015. 7. 1).

9) 2013년 기준 민사 15건, 가사 14건, 형사 10건, 행정 0건, 기타 8건으로 나타났다.(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활동 지침서」, 2014, p.12).

10) 판결문 검색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이 거의 검색되지 않은 이유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재판에서 북한이탈주민인지가 쟁점이 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사자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이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판결문 검색 결과에 포함된 민사사건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북한이탈주민이 정착과정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국가배상청구, 탈북용역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등 당사자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점이 판결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현황과 전문가집단 자문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에게 발생하는 법률문제 중 상당수가 일반 민사사건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민사사건

판결문 검색 결과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당사자인 민사사건으로는 정착지원금 청구, 국가배상 청구, 탈북용역계약에 따른 약정금 청구 사건 등이 있었다.¹¹⁾ 판결문 검색 결과에서는 30건으로 적은 수의 판결문이 검색되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남북하나재단의 법률상담 현황 및 전문가집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민사사건으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남한 사회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북한에서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쉽게 보증을 서주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으며, 투자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북한이탈주민과 형사소송

1) 형사 피고인 또는 형사 피의자

판결문 검색 결과, 북한이탈주민의 범죄 유형으로는 사기,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폭행치상 등이 있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건이 많다는 점이 다소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집단 자문 결과와 북한이탈주민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이 폭행,¹²⁾ 사기¹³⁾ 등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북한에서 마약을 접한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도 마약 범죄를 쉽게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개인 사이의 법률문제는 자력구제방식인 폭행 등으로 해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북한에서의 방식대로 폭행을 행사하였다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실제로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8명 중 4명이 이웃과의 다툼으로 폭행 등의 죄로 기소된 경우였다.

11) 행정사건은 8건이었는데, 북한이탈주민을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주민등록번호 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 북한이탈주민 허위 불인정 통보처분 취소소송 등이 있었다.

12) 일반적인 폭력 사건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도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13)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2) 형사 피해자

남북하나재단에서 2000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1,200명에 대하여 2010년에 실시한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에 관한 분석보고서에¹⁴⁾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남한에서 생활하면서 본인, 가족 또는 친구가 범죄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30명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의 내용을 중복으로 응답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이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폭행 또는 상해(27.6%)’, ‘투자(부동산 등) 또는 알선 등의 사업사기(17.9%)’, ‘일자리(구직)사기(13.8%)’, ‘북한가족초청사기(9.8%)’, ‘성폭력 및 성희롱(8.1%)’, ‘혼인사기(4.9%)’, ‘절도(4.9%)’의 순으로 나타났다.¹⁵⁾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폭행, 상해 사건 중에는 가정폭력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문가집단 자문 결과에 의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여성 북한이탈주민 6명 중 3명이 가정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문화의 영향으로 북한이탈주민 남성은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도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대하여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여성은 중국 체류 기간 중 중국 국적의 남성과 동거하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 있는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동거하는 중국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표 1>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 경험

구분	N	비율
폭행 또는 상해	34	27.6%
성폭력 및 성희롱	10	8.1%
일자리(구직)사기	17	13.8%
투자(부동산 등) 또는 알선 등의 사업사기	22	17.9%
북한가족초청사기	12	9.8%
혼인사기	6	4.9%
보이스피싱(전화사기)	35	28.5%
절도	6	4.9%
합계	142	115.4%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분석보고서』, 2010. 12, p.132.

1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분석보고서』, 2010. 12.

15)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분석보고서』, 2010. 12, p.132. 본문의 (표 1)은 위 책 같은 면의 (표 II-7-4) '범죄피해 경험 여부'를 인용하였다.

당하더라도 이에 대항하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많고 남한에 함께 입국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남한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형사 피해자가 되었을 때 가족 이외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우 가족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워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용역계약에 따른 채무의 변제와 북한에 있는 가족에 대한 송금을 위하여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의 처지를 이용한 대출사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정착지원금을 기초로 남한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되므로 재산범죄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피해는 이들로 하여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생존권적인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제도 접근 및 재판절차 이용상 어려움

여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의 결과와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분석 및 전문가집단의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사법제도에 접근하거나 재판절차를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 수립 및 운영 시 고려할 점들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으로 인한 어려움

먼저, 최봉대(2011)¹⁶⁾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실시한 북한 주민의 법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여기에서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은 법을 정치의 수단으로 생각하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⁷⁾ 또한 법이 개인의 권리구제수단으로

16) 최봉대,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새로운 법제도 적응 지원방안」,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 연구』, 통일부, 2011.

17) 북한은 김일성 1인지배체제의 유지 및 세습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당의 기능을 절대시하며, 법의 측면에도 이와 같은 점이 반영되어 법은 전적으로 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데(윤대규, 「분단 65년 - 북한법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 『북한법연구』, 제13호, 북한법연구회, 2011, p. 270), 이와 같은 점이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다는 점에 관하여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에서는 개인 사이의 분쟁을 사법적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사이에서 사적으로 해결하는 법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등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북한이탈주민이 폭행 등으로 형사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의 법은 공정하지 않고 북한 사회는 뇌물이 작용하는 사회이며 뇌물을 주면 재판 결과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 중 상당수가 남한에서도 뇌물을 주면 재판을 승소하게 해줄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은 법의 규범력을 낮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 생계를 위해서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에서는 신분이나 뇌물공여 여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법의 규범력을 더욱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에서 형성된 법의식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사법적 권리구제절차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형성된 법의식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의 권리를 사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사법기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어려움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사법기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¹⁸⁾ 이에 따라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서 사실을 진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이와 같은 두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경찰의 말에는 무조건 순응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생명에 위협을

18)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정치범에 대하여 공개재판을 하고 총살하는 모습을 본 것 이외에는 별다른 재판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경찰과 법원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받을 수 있다고 인식한 경우가 있었다. 또한 법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¹⁹⁾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사법절차에서 필요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제적 진실 발견과 이에 따른 적절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데 장애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이 사법절차에서 필요한 공격·방어를 하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을 선고 받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북한이탈주민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이 경험한 대로 솔직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고, 법원은 북한이탈주민이 형사 피고인인 사건을 재판할 때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의 진술 신빙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⁰⁾

3.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주민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남한 주민과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언어는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인식체계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면 같은 말이라도 다른 것을 뜻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지난 70여 년간의 남북 분단과 완전한 문화적 단절 및 소통 부재 상태로 인하여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이 각기 다른 문화적 정체성과 인식체계를 바탕으로 말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²¹⁾

전문가집단 자문 결과와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특히 입국 초기의 북한이탈주민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한 후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적응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감소한다고 한다.²²⁾ 다만, 법률용어에 대한 이해도는 입국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더라도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²³⁾

19) 다만, 사법기관에 대한 두려움은 북한이탈주민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경우 법정에서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 남성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의 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남성 중에는 오히려 법정에서 재판자에게 막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북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자유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0) 전문가집단 자문결과, 북한에서의 공권력에 대한 인식, 수사과정에서의 두려움, 대한민국의 형사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이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북한이탈주민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21) 사유경,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두 가지 근본문제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 해법』, 『대한정치학회보』, 제21집, 제2호, 대한정치학회, 2013, pp.316-317.

22) 전문가집단 자문 결과, 전문가가 직접 변호한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한다. 북한이탈주민을 입국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으로 나누어서, 입국 1년 미만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지만, 입국 5년 이상이 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일반 국민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집필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과의 일반적인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법률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남한에 거주한 지 오래된 북한이탈주민과의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일상 언어가 아닌 법률 용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데에서 오는 일반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남북한 언어의 상이성에서 초래되는 어려움일 수도 있다.

법률문제가 다투어질 때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법률적인 주장을 펼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남한과 북한의 언어의 상이성은 북한이탈주민이 전문가의 도움 없이 재판절차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소송 등 사법절차에서 이와 같은 의사소통상의 어려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법제도, 재판절차 및 지원제도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북한이탈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안내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의사소통에서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4. 대한민국 사법제도와 재판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대한 정보가 단절되어 있는 북한에서 오랜 기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은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한민국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 사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²⁴⁾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생활 적응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거나 불편했던 점으로, 남한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이 포함되어 있었다.²⁵⁾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북한이탈주민이 재판절차에 접근하는 과정에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과정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며, 현재 어떤 절차에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재판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은 북한이탈주민이 재판절차에서 적절한 공격·방어를 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

23) 전문가집단 자문 결과, 북한이탈주민과의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법률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남북한은 문화적 차이가 크고,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형성된 고정관념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함경북도 등 평양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다가 탈북한 경우가 많아 북한에서도 법률용어를 접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4) 법원행정처, 『북한 사법제도에 대한 설문 조사』, 2006. 3.

25) 그 밖에도 남한 주민의 탈북자에 대한 금지 않은 사선, 외로움, 언어 장벽, 경제적인 어려움, 문화와 사고의 차이, 취업이나 입학 시 불이익 등의 답변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구체적인 재판절차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남한에서는 개인 사이의 분쟁에 대하여 법원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재판을 하는데, 이와 같은 재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은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법원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가기관과 남한 사회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 심리적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 법원이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이들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사회 그리고 남한 주민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의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5. 사법적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 중에는 사법적 지원제도²⁶⁾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거나, 사법적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사법적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기존의 여러 지원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지원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원제도를 북한이탈주민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이 사법적 지원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평소 사법적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특히 법률문제가 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사법적 지원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가족 등 조력자의 부재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의 가족을 떠나 혼자 남한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과 함께

²⁶⁾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의 사법적 지원제도로는 남북해상재단의 법률상담,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상담, 대한연합법률구조재단의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등이 있다.

남한에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 구성원 역시 남한 사회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게는 북한과 다른 남한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는 조력자 부재 상태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하나재단에서는 전문상담사제도와 정착도우미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착도우미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우며, 전문상담사는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기 어렵다.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은 신변보호담당관에게 법률문제를 상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변보호담당관도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즉,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착지원제도만으로는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겪는 외로움과 막연한 두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⁷⁾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에게 법률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들이 언제든지 쉽게 사법적 지원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상처와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사법부 구성원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세미나나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7. 경제적 어려움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입국 후 거주지에 정착하면서 정부로부터 지급 받는 정착지원금을 기초로 남한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와 같은 정착지원금 중 상당 부분을 탈북브로커에게 탈북용역계약에 따른 약정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남한 생활을 위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남북하나재단에서 실시한 ‘201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²⁸⁾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상용직,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 1,073명의 월평균 급여는 141.4만원으로 남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급여(228.8만원)²⁹⁾의 2/3에 채 미치지 못한다.

27) 전문가집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에 모든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강하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내고 있는 데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의지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12. p.45.

29) 고용노동부,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북한이탈주민 임금근로자 중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비율은 10명 중 1명 미만(8.0%)에 불과하며, 월 소득 101만원에서 150만원의 비율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³⁰⁾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므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은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절차에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법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 데 일반 국민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재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상호 간의 이해 부족과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는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상호 간의 이해 부족과 편견을 들 수 있다.³¹⁾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재판절차에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었다.³²⁾ 또한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 중에는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에서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야기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이 편견과 차별을 느끼는 데에는 실제로 남한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동안 경험한 사회와 문화가 다르다 보니 남한 주민의 말과 행동을 북한이탈주민이 오해하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과 남한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과 남한

3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12, p.45.

31) 남한 주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은 남한 주민들의 편견 내지 적대적인 태도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불안감, 불신감, 분노, 편견증적인 마음, 위축감 등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활동 지침서」, 2014, p.40).

32)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일상생활에서 남한 주민의 편견과 차별을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하였고, 재판절차에서는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대한민국 법원은 법과 정의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주민이 북한이탈주민의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이 모두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이 사법적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재판절차 등에서 심리적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사이의 편견과 오해로 인한 불신이 제거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한 노력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 모두 함께 하여야 할 것이지만, 북한이탈주민은 탈북과정에서 생명의 위협과 인권 침해를 겪으며 남한에 입국하였고, 남한에서는 북한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남한 주민이 먼저 북한이탈주민의 현실과 아픔 그리고 특수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소송 등 법률문제 현황과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를 이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초기에는 가사사건과 탈북용역계약에 따른 법률분쟁 등 북한이탈주민 특유의 법률문제를 겪지만, 정착기간이 오래될수록 일반 국민과 같은 일반적인 법률문제를 겪게 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은 ‘사건’ 자체의 특수성의 관점에서 나아가 이들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남한의 법과 제도를 경험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형성된 법의식과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사법적 권리구제수단을 통해 그 권리를 구제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70여 년간 분단 상태가 지속되면서 남한과 북한의 언어의 상이성이 발생하여 북한이탈주민은 사법절차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어렵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북한이탈주민은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탈주민의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 공공기관 및 변호사단체 등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법교육 등 지원 활동을 펼쳐 왔고, 북한이탈주민은 이와 같은 지원제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감소하는 등 기존 지원제도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이 보다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성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이 법률문제 발생 시 실제로 겪는 어려움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에 비추어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법률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법절차와 지원제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법접근성을 강화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이 사법적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와 재판절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절차에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남북하나재단과 같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존의 사법적 지원 방안을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일 역시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은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탈주민을 통하여 통일 후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사법제도를 이용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법절차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사법적 지원에 기여하고, 나아가 통일 후 북한 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3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3.
- 남북하나재단 제공 자료, 2015. 7. 1.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법률지원활동 지침서』, 2014.
- 법원행정처, 『북한 사법제도에 대한 설문 조사』, 2006. 3.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분석보고서』, 2010. 1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3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2013. 12.
- 서유경, 「현행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두 가지 근본문제와 다문화주의적 사회통합 해법」, 『대한정치학회보』 제21집, 제2호, 대한정치학회, 2013.
- 윤대규, 「분단 65년-북한법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 『북한법연구 제13호』, 북한법연구회, 2011.
- 이학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5. 11.
- 최봉대, 「통일이후 북한주민의 새로운 법제도 적용 지원방안」,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 연구』, 통일부, 2011.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책 최근 현황」,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440>, 검색일: 2016. 7. 11).

〈관련자료 목록〉

- 곽한영, 「법의식 연구의 경향에 관한 연구: 법의식의 개념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6권 제2호』, 한국법교육학회, 2011. 12.
- 김갑식, 「김정은 정권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한국과 국제정치 제30권 제1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4. 3.
- 김도태, 「북한이탈주민의 시민교육 내용과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제29권 제2호』,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설자료집』, 2010. 2.
- 박영정,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 적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법무부, 『북한이탈주민과 법률생활』, 2009.
- 법무부·통일부·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률구조공단,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2014.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 방안』, 2010.

- 손행선, 『북한이탈주민 법률사례 해설』, 한국학술정보, 2008.
- 송인호, 『통일법강의』, 법률신문사, 2015.
- 양현아, 「법문화와 법의식」,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다산출판사, 2013.
- 유욱 외 공저, 『북한이탈주민의 법의식 제고 및 법률 지원 추진체계 정립방안 연구』,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2013. 12.
-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제6호』, 북한법연구회, 2003.
- 이규창, 「탈북자의 법적 지위」, 『통일사법정책연구(1)』, 법원행정처, 2006.
- 이덕연,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탈북민의 법적 지위: 현황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0집 제2-1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8.
- 이대우 편, 『탈북자와 함께 본 북한사회: 북한문제의 딜레마와 해법』, 오름, 2012.
- 이창무 외 공저,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실태 분석을 통한 정착지원 거버넌스 구축방안』,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3.
- 이철수 외 공저,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통일연구원, 2005.
- 이철수 외 공저, 『사회복지사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매뉴얼』,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2009.
- 장준오 · 고성호,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2.
- 통일부 ·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2011.
- 통일부, 『2015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정착지원 매뉴얼』, 2015.